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발 의 자**: 도하석 의원 등 10명(황국주, 이선주, 남현주, 정순옥, 정창근, 박종길, 박정환, 김장관, 김기열)

○ **발의일자**: 2024. 11. 6.

○ **회부일자**: 2024. 11. 6.

○ **검토기간**: 2024. 11. 6. ~ 11. 11.

2. 제안이유

○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재난도우미 운영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조, 제33조의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
- 「지방자치법」 제13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11. 6. ~ 11. 17.):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폭염 실태조사,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9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하여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의 적극적인 예방 및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폭염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클린로드・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안전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옥상, 지붕에 고반사율의 도료 시공 등 쿨루프사업
3.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비,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 4.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6. ~ 9의2. (생 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3.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 18. (생 략)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 9. (생 략)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거. (생략)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